

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관정서(구매기업용)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1조 ~ 제9조 <기재 생략></p> <p>제10조 (구매대금 결제계좌 개설)</p> <p>① <기재 생략></p> <p>② 제 1 항의 결제계좌는 구매대금 결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며, 타 용도로 사용하여 구매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상환되지 않을 경우의 모든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은행에는 <u>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.</u> <신설></p> <p>③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<u>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11조 ~ 제18조 <기재 생략> <신설></p>	<p>제1조 ~ 제9조 <현행과 동일></p> <p>제10조 (구매대금 결제계좌 개설)</p> 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② 제 1 항의 결제계좌는 구매대금 결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며, 타 용도로 사용하여 구매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상환되지 않을 경우의 모든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은행에는 <u><삭제>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</u></p> <p>③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<u>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은행과 약정 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, 당좌대출의 이자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11조 ~ 제18조 <현행과 동일></p> <p>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</p>	<p>- 약관변경 권고 반영</p> <p>- 약관변경 권고 반영</p>